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4
----------	-------

제출년월일 : 2016.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5.8.5-환경부) 등에 따라 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서울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전입 전 종량제봉투를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대형폐기물 환불 규정 일부 수정(안 제29조의 2)

- 대형폐기물 취소(환불 신청) 시 수기로 관리하는 장부 폐지 및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환불 요구사항 관리

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1)

- 대형폐기물 품목 중 금고는 철제안에 콘크리트 등 보안장치가 되어있어 처리가 어려워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

라. 특수규격봉투 용량 추가에 관한 사항(안 별표4)

- 건설폐기물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봉투의 용량을 기존 50ℓ 외에 20ℓ를 추가하여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편의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 되는 규제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7. 21. ~ 8. 10.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동의

다.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6.8.16)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카리·동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음·진동 관리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주변환경”을 “주변 환경”으로,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별표1에서”를 “별표 1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2에서”를 “별표 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5톤”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지체없이”를 “하며, 지체 없이”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2에서”를 “별표 2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배출할수”를 “분리배출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및 주변환경”을 “및 주변 환경”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타구에서 전입해 온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중 “알아 볼”을 “알아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제4호규정”을 “제10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를 “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9조제1항 규정”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를 “비용이 포함되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처리시”를 “반입처리 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에게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4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중 특수 규격봉투 20리터 가격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7호 관련)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1	냉장고	업소용 1000ℓ 이상	25,000	31	비디오	본체	2,000
2		500ℓ 이상	11,000	32	식기건조기		2,000
3		300ℓ 이상	8,000	33	식기세척기		4,000
4		300ℓ 미만	6,000	34	오디오	본체	4,000
5	텔레비전	42인치이상	7,000	35		스피커(1개)	2,000
6		25인치이상	5,000	36	전기밥솥	10인용이상	3,000
7		25인치미만	3,000	37		10인용미만	2,000
8	컴퓨터	본체	3,000	38	전자레인지		2,000
9		모니터(CRT)	3,000	39	가스레인지		3,000
10		모니터(LCD)	2,000	40	전화기		1,000
11		프린터	3,000	41	청소기	업소용	3,000
12		키보드	1,000	42		가정용	2,000
13	에어컨 (실외기포함)	80㎡이상	11,000	43	정수기	20ℓ 이상	5,000
14		66㎡이상	7,000	44		20ℓ 미만	3,000
15		66㎡미만	4,000	45	자동판매기	대형	14,000
16	세탁기	10kg이상	6,000	46		소형	6,000
17		10kg미만	5,000	47	장롱(옷장)	가로120cm 이하	18,000
18		6kg미만	4,000	48		가로 90cm 이하	13,000
19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6,000	49		가로 60cm 이하	10,000
20		높이1m미만	3,000	50	침대	1인용(전체)	13,000
21	탈수기	3,000	51	2인용(전체)		18,000	
22	공기청정기	80㎡이상	4,000	52		1인용메트리스	7,000
23		66㎡이상	3,000	53		2인용메트리스	11,000
24		66㎡미만	2,000	54		1인용침대틀	6,000
25	선풍기	가정용	2,000	55	2인용침대틀	7,000	
26		산업용	3,000	56	돌침대	1인용	26,000
27	가스히터	2,000	57	2인용		36,000	
28	가습기	2,000	58	소파	3인용	8,000	
29	녹즙기	1,000	59		2인용	6,000	
30	믹서기	1,000	60		1인용	4,000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61	책상	양수	9,000	94	자전거	(2발)	4,000
62		편수	6,000	95		아동용(3발)	3,000
63	컴퓨터책상	너비120cm이상	4,000	96	옷걸이(행거)		2,000
64		너비120cm미만	3,000	97	난로		3,000
65	의자	3인용	7,000	98	가방	여행용(바퀴부착)	3,000
66		2인용	5,000	99		일반용	2,000
67		1인용	3,000	100	다리미		1,000
68	책꽂이	3단이상	3,000	101	다리미판		1,000
69		3단미만	2,000	102	돗자리	1㎡당	1,000
70	서랍장	5단이상	6,000	103	드라이기		1,000
71		4단이하	3,000	104	병풍	2쪽당	1,000
72	화장대		4,000	105	보일러		4,000
73	책장	1㎡당	4,000	106	빨래건조대		1,000
74	진열장(진열대)	1㎡당	4,000	107	수족관	영업용1㎡당	10,000
75	장식장	1㎡당	4,000	108		가정용1㎡당	4,000
76	문갑	1㎡당	4,000	109	스키		3,000
77	식탁(테이블)	5인용이상	5,000	110	시계	1m이상	3,000
78		4인용이하	3,000	111		1m미만	2,000
79	차탁자(교자상)		2,000	112	싱크대	1쪽당	4,000
80	쌀통	1㎡당	3,000	113	욕조		6,000
81	찬장	1㎡당	4,000	114	유아용	그네	1,000
82	신발장	1㎡당	3,000	115		목마	1,000
83	거울(유리)	1㎡당	2,000	116		자동차	2,000
84	밥상	5인용이상	3,000	117	유모차(보행기)		3,000
85		4인용이하	2,000	118	이불	1채당	2,000
86	비키니옷장		1,000	119	욕매트	2인용	7,000
87	캐비닛		6,000	120		1인용	4,000
88	액자	1㎡ 이상	2,000	121	장판	1㎡ 당	1,000
89		1㎡ 미만	1,500	122	카펫	1㎡당	2,000
90	문짝	1짝당	2,000	123	전기장판	1인용	2,000
91	피아노		30,000	124		2인용	3,000
92	전자피아노(오르간)		6,000	125	재봉틀		3,000
93	화일캐비닛		4,000	126	< 삭 제 >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127	타이어	대형(1,100mm이상)	6,000	140	창문	1짝당	2,000
128		중형(600mm이상)	3,000	141	오락기	업소용	9,000
129		소형(600mm미만)	2,000	142		가정용	3,000
130	타자기		2,000	143	파티션	1㎡ 당	3,000
131	탁구대		15,000	144	팩시밀리		3,000
132	화분	50cm이상	1,500	145	복사기	1m이상 (재활용불가시)	9,000
133		50cm미만	1,000	146		1m미만	2,000
134	물탱크	1t용량당	10,000	147	환풍기		2,000
135	서랍(만)	장롱·옷장용	2,000	148	김치독	용기류제외	3,000
136		책상용	1,000	149	블라인드	2㎡당	1,000
137	세단기		5,000	150	런닝머신	(재활용불가시)	10,000
138	세면대		3,000	151	마네킹		3,000
139	수도호스	10m당	1,000	152	화환		3,000

-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제18조 관련)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 업 장 생활계폐기물용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부터
5ℓ	120	130	-	-
10ℓ	220	250	-	-
20ℓ	440	490	-	-
30ℓ	660	740	1,080	1,200
50ℓ	1,100	1,250	1,800	2,000
75ℓ	1,650	1,880	2,700	3,000
100ℓ	2,220	2,500	3,600	4,000

(특수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ℓ	-	2,040
50ℓ	4,600	5,100

※ 음식물류폐기물봉투 가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폐기물"이란 <u>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카리·동물의 사체</u>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p> <p>2. (생략)</p> <p>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u>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u>을 말한다.</p> <p>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p>	<p>제1조(목적) ----- ----- <u>시행규칙</u>,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u>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동물</u>----- ----- -----.</p> <p>2.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3. -----</p>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생략)

5. (생략)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 「소음·진동관리법」 -----

4. -----

가. -----

----- 제5호까지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 주변 환경 -----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
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
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
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
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
한다.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
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
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
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
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
다.

10. · 11. (생 략)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

의료폐기물

7. -----

별표 1에서 ---
-----.

8. ----- 별표 2에
서 -----

-----.

9. -----

-----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

10. · 11. (현행과 같음)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생략)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

----- 하며, 지체 없이 -----
----- 지체 없
이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6조에 따른

-----.

1.·2. (현행과 같음)

3. ----- 별표 2에서

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 6.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

----- 분리
배출할 수 -----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및 주변 환
경 -----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생략)

<신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

-----.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타구에서 전입해 온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량제봉투 판매인은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 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의

----- 알아 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

-----.

② -----

----- 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30조(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징수)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부과·징수금액은 실제제작비에 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생략)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부과·징수) 제9조제1항-----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폐기물처리시설-----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비용이 포함되며 수도권 매립지 -----
- 반입처리시 -----

-----.

④ ~ ⑥ (생략)

제34조(가산금 등) ① 제3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별표 1]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7호 관련)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125	재봉틀		3,000
126	금고	0.5㎡ 당	10,000
127	타이어	대형(1,100mm이상)	6,000
128		중형(600mm이상)	3,000
129		소형(600mm미만)	2,000

[별표 4]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가산금 등) ① 제33조제1항 및 제3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
----- 자에게
는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7호 관련)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125	재봉틀		3,000
126	< 삭제 >		
127	타이어	대형(1,100mm이상)	6,000
128		중형(600mm이상)	3,000
129		소형(600mm미만)	2,000

[별표 4]

총량제봉투 가격(제18조 관련)

(특수규격봉투 가격) (단위: 원)

구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신 설 >		
50ℓ	4,600	5,100

총량제봉투 가격(제18조 관련)

(특수규격봉투 가격) (단위: 원)

구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ℓ	-	<u>2,040</u>
50ℓ	4,600	5,100